



전 주 지 방 법 원

이행권고결정

사 건 2022가소 대여금
 원 고 김
 주소 전주시

피 고 박
 주소 서울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행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2. 7.

사법보좌관



- ※ 1.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소액)	법원주사보
직 통 전 화 : 063-259-5520, 5522(이행권고)		
팩 스 :		e-mail :

증명원

사 건 : 2022본2

채 권 자 : 김

채 무 자 : 박

집 행 권 원 :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 2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합니다.

아 래

2022.10. .자 접수되어 2022.10. .자 사용

채 권

한 사실. 끝.

집 행 권 원

2022. 10. .

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2022.10.13

인

한 사실.

집 행 권 원

2022.10.13

채 권

한 사실.

집 행 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2타채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김 ()
전북 전주시
()
송달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필 사무소 (만성동 1366-9)
송달영수인 : 전종필

정 본입니다.

2022. 11.

전주시로



채 무 자 박 ()
서울
제 3 채 무 자 농업협동조합
전북
(소관 :)
대표자 조합장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3,800,647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신청취하서

사 건 2023카불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담당재판부:52단독(집행)]
채 권 자 김
채 무 자 박

신청인 김 는 사건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2023.03.

채권자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